

산재법상 최고, 최저보상 제도에 대하여

신현순 노무사 | 032-555-4052

최고보상금액
180,919원

최저보상금액
50,255원

근로자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는데 급여산정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다. 이러한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1일치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 재해근로자의 임금은 경력 및 기술수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임금으로 인한 고액의 평균임금이거나 또는 저임금으로 인한 아주 낮은 수준의 평균임금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전체근로자의 평균수준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으로 인하여 공익목적의 산재보험 취지를 해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동법에서는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보상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최고보상기준금액)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보상제도의 목적은 공익 실현

이와 관련, 최근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에게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선고 결정이 있었다(선고 2012헌바382외(병합) 결정). 내용은 ‘최고보상제도가 2000년 최초 도입되어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온 산재근로자들인 청구인들이 2007. 12. 14.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들은 최고보상제도 도입 이후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왔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을 인용하면,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인 사건 청구인들의 산재보험수급권은 2000. 7. 1.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산재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들에게 발생하였으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일시금과 달리 매달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은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보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보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수급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 즉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 보상연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는 다른 산재근로자와 달리 8년 동안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왔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최고보상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정한 보험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2000년 최고보상제 이전 산재근로자인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관련 산재법 제36조 제7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2014년 현재 적용 최고보상금액은 180,919원이며 최저보상금액은 50,255원이다. ☺